

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

제정 2010. 10. 4 조례 제110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형유통기업”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·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.
2. “중소유통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.
3. “소상공인”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상생협력”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상호간에 인력·자금·구매·판로·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상생협력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
2.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사항
3.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
- 5.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상생협력계획의 심의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
- 2.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
- 3.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- 5.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- 1. 용인시의회 의원
- 2.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국장
- 3. 용인시 소재 대형유통기업 대표
- 4. 용인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
- 5.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단체 대표
- 6. 용인시 소재 소비자단체 대표
- 7. 그 밖에 유통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
2.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
3.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
5. 선진 유통기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(대형유통기업의 기여 및 협력 등)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
2.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
3.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7조(상생협력 촉진 지원)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의 유지)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